

2025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은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을 통하여 중소 전통문화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보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5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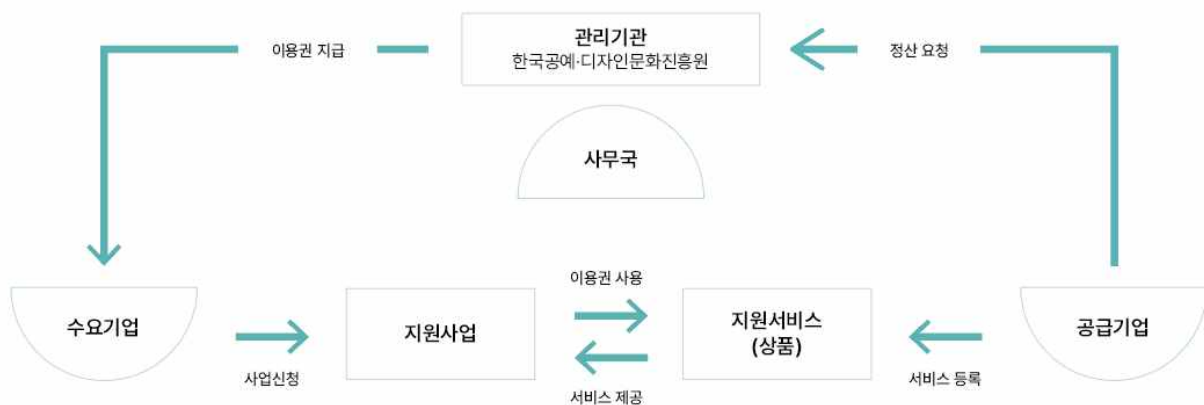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전통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필요로하는 과업 수행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 도모
- 전통문화 산업 분야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한 자율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10개월)

□ 주요내용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공진원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지원규모 : 최대 500백만원, 25개사

구분	지원금액(백만원)	선정규모(기업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20	25

※ 특정 유형에서 유효 기업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타 유형에서 추가 선정 가능

□ 운영방식

- (서비스 메뉴 구성) 총 6개 서비스 분야 구성

서비스분야	서비스 유형
기술혁신	• 연구개발(R&D)를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료 • 전통 기술의 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 등록비용 지원 • 브랜드 정품 인증, 디자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 등록 비용 지원
기업경영 지원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 재무, 회계, 전략 등 일반 경영지식 교육, 분석 및 컨설팅 • 상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컨설팅 • 시장동향 분석, 시장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조사, 분석과 컨설팅
디자인 개선	• 브랜드 및 제품 매뉴얼, 리플렛, 카달로그 등 제작 • 포장 디자인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 다품종 소량 생산 시제품 디자인 제작비 ※ 제품 양산X, 시제품 디자인 제작시 필요한 비용
신제품 개발	• 전통문화상품* 관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및 기획료 • 전통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 웹, 모바일, 기타 사이트 구축을 통한 디지털화 지원 • 웹, 모바일, 기타 사이트의 UX, UI 등 고도화 • 스마트 기반 기술도입 및 고도화(메타버스, XR, AR, VR 등)
홍보·마케팅	• 기업/상품/브랜드 관련 매체 광고(TV, PPL등) • SNS·검색엔진 마케팅 ※ 충전금 지원 불가, 실 집행내역 추후 첨부 • 블로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 홍보 사진(화보)·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한 마케팅

※ 홍보·마케팅 서비스는 단순 콘텐츠 제작비 지원이 아닌 제작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필수임

※ 시제품(샘플), 인쇄 등 제작비용 서비스 계약 금액의 20% 초과 불가

- (이용권 사용) ① 선정 이후 이용권 서비스 메뉴에서 ② 희망 서비스 선택 후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③ 서비스 구매 후 계약 체결
- (자부담금) 선정 후 지원금의 10% 자부담금 납부 필수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이 지원금에 우선하여 소진됨

□ 지원내용

- (이용권 제공) 전통문화산업 분야 해당 기업 지원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금액) 한도 내 최대 2개 서비스 신청 가능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전통문화 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공급기업 : 전통문화 분야 기업에 기술혁신, 디자인 개선, 플랫폼 구축 등 이용권 서비스 제공
- 수요기업 : 이용권을 발급받아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

- (컨설팅 강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통한 지원
 - 기업별 컨설턴트 배정을 통해 서비스 분석, 매칭 단계 등 지원 강화
- (네트워킹) 기업 간 정보공유, 매칭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기회 제공
- (우수성과 홍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시상 및 홍보지원

- 공모명 : 2025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모기간 : 2025. 3. 26.(수) ~ 4. 17.(목)
- 선정발표 : 2025. 4. 30.(수)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게시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 공모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

※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으로만 신청 가능

※ 대표자가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해당 인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시 제외대상은 유의사항 참고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2항, 제2조3항

- [전통문화상품]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전통문화산업]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신청 불가 대상

- ◆ 휴·폐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
-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에 참여하여 수요기업으로 3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 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2025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에 중복 참가하고 있거나 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급기업과 대표자가 같은 기업
 - 공급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가 같은 기업
 - 공급기업 대표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 ◆ 정부 지원사업 제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하위조직 포함)
-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규모 : 최대 500백만원, 25개사**

구분	지원금액(백만원)	선정규모(기업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2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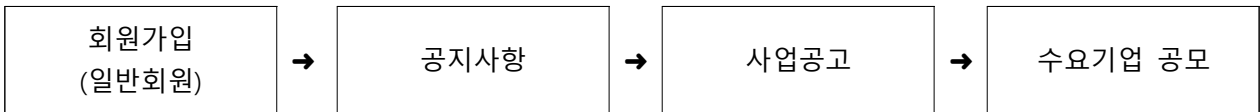
※ 특정 유형에서 유효 기업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타 유형에서 추가 선정 가능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 4. 17.[목] 23:59**

※ 접수마감 시간 내에 온라인상 접수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인정(제출 후 수정 불가)

□ **신청방법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www.voucher.kcdf.or.kr) 통해 접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 접수절차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본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불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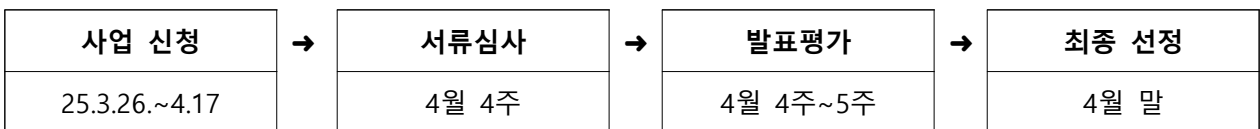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후 최종 대상 기업 선정**

○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기업의 1.5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인터뷰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해야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참석 가능

○ 선정절차 흐름도



□ **선정방법 : 외부 심사위원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별 배점 및 기준

구분	요소	세부 평가항목
수행계획 (50)	적절성(필요성)	○ 본 사업 수행 필요성 및 목표설정 적정성
	실행가능성	○ 본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전통문화산업과의 연관성)
	혁신성	○ 사업 계획의 혁신성, 경쟁력 등
수행역량 (15)	참여의지	○ 참여기업 수행역량(준비도, 역할분담, 추진의지, 실적증명 (매출/투자/고용) 등
기대효과 (35)	기대효과	○ 사업 참여 기대효과
	발전성	○ 사업 수혜 후 사업 운영 계획

☐ 문의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운영사무국	02-398-1683	b_voucher@kcdf.kr

(운영시간) 평일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의 사업계획,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서 검수 등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진흥원 운영 규정,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매뉴얼을 따름
 -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해야 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경우, 해당연도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협약체결 기간 내 참여기업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 자격 재검토에 따른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업 부정행위 판정 시 자격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 조회 동의를 전제함
 - 선정된 기업은 성과평가의 평가 기준(점수 60점 미만) 미달 시 수행 비용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주관처가 진행하는 교육, 사업평가, 보고회 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오리엔테이션, 매칭행사, 컨설팅,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석)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지원이 불가하고 공모 지원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① 아래 공모 신청 제외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본 사업에 중복 참가하고 있거나 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급기업과 대표자가 같은 기업
 - 공급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가 같은 기업
 - 공급기업 대표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 정부 지원사업 제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하위조직 포함)
- ※ 대표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② 자부담금(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금의 10%)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음
 -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③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였거나 심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④ 제출실적 및 전통문화산업 종사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 ⑤ 협약기간 중 이용권(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⑥ 참여기업(공급기업-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거나 부정 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
- ⑦ 기업(대표자 포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기타 제출한 사업 계획의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 구성원·회원인 경우 제외
-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의 구성원·회원인 경우 제외
 - ※ 최종 선정기업 업무협약 시, 참여 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 서약서 제출 필수

- (규정위배 제재조치)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향후 전통문화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제재조치)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정행위 판정 시 자격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부가금(5배 이내)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가 판정될 경우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시행함)
- (부정행위 신고센터) 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수행주체의 부정행위 발견시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가능함
 - ※ 이메일 접수 : b_voucher@kcdf.kr
- (신용 조회 동의) 동 사업에 지원·참여하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 동의를 전제함

붙임) 1. 공모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2. 수요기업 신청 관련 서식. 끝.

붙임1

공모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 제출 서류 목록 및 작성지침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명		제출방법	비고
1	신청서	필수	PDF파일 첨부	[별지 서식 10호]
2	사업수행계획서	필수	PDF파일 첨부	[별지 서식 11호]
3	사업자등록증	필수	PDF파일 첨부	2025년 발급
4	국세/지방세/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PDF파일 첨부	공모 기간 내 발급분
5	개인(대표자) 인감증명서	필수	PDF파일 첨부	
6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PDF파일 첨부	
7	서약서	필수	PDF파일 첨부	[별지 서식 12호]
8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	PDF파일 첨부	[별지 서식 2호]
9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	PDF파일 첨부	[별지 서식 3호] 사업 참여 인력 전원 제출
10	사용인감계	선택	PDF파일 첨부	[별지 서식 7호]
11	법인등기부등본	선택	PDF파일 첨부	법인 해당시 (2025년 발급)
12	법인인감증명서	선택	PDF파일 첨부	법인 해당시
13	주주명부	선택	PDF파일 첨부	주식회사의 경우
14	대리인 위임장	선택	PDF파일 첨부	[별지 서식 43호] 대표자 외 신청시
15	재직증명서	선택	PDF파일 첨부	대표자 외 신청시
16	회사소개서	선택	PDF파일 첨부	자유양식

※ 서류 작성시 아래 공모제출 서류 작성지침을 참고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에 파일 업로드 시 PDF로 변환, 서류명 변경하여 제출

- 예) 수요기업 신청서-000기업명

※ 제출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시 유의

○ 제출서류별 작성지침

① 공모 신청서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 서비스분야 신청을 서비스금액의 총액 내에서 최대 2개 분야 / 최대 2개 이내 선택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상 관련 내용을 필수로 작성

② 신청서 [별지 서식 10호]

- 주 생산품 : 기업의 생산 품목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명을 기재

- 매출액 : 재무제표의 매출액 기재,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간편장부대상자 등)은 부가세과세표준증

명원의 매출액을 기재

- 종업원 수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의 전년도 연말 기준 인원 기재

③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 11호]

- 파란색 안내 글자를 참고(확인 후 삭제),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작성시 본문 글꼴은 휴먼명조 13pt로 작성하고, 검정색으로 작성
- 사진 파일 첨부 시 고화소의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넣으며, 필요시 사진 별도 첨부
- 사업 참여인력 작성시 [별지 서식 2] 제출 필수